



노인복지법

[시행 2026. 1. 24.] [법률 제20093호, 2024. 1. 23., 일부개정]

보건복지부 (노인정책과 - 총괄) 044-202-3456, 3455
보건복지부 (노인정책과(노인학대·인권)) 044-202-3452, 3453
보건복지부 (노인정책과(주거복지)) 044-202-3459, 3454
보건복지부 (요양보험운영과(재가복지)) 044-202-3523, 3515
보건복지부 (요양보험운영과(의료복지)) 044-202-3523, 3518
보건복지부 (노인지원과(여가복지)) 044-202-3478, 3479

제27조의4(노인성 질환에 대한 의료지원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성 질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노인성 질환의 예방교육, 조기발견 및 치료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노인성 질환의 범위, 지원의 대상·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7. 10. 24.]